

제5장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한 관련법령 검토 연구

이 내 성

제1절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족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총조사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럽 여러 국가들은 전통적 방식의 센서스가 갖고 있는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통계생산에 있어 행정등록자료의 활용은 응답자부담 경감과 조사비용 절감, 통계작성 주기의 축소, 중복조사 배제 등의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로 이제는 국가가 국민 및 가구에 관한 여러 형태의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에 기초한 통계생산은 조사항목의 개념·포괄범위 등의 불일치성 문제 이외에도 자료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의 확장과 정보사회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정보가 전자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의 노출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



[그림 5-1] 정보누출의 피해

특히 행정자료는 개인에 관한 민감한 개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 관리, 이용, 제공 등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활용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의 특성에 따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오늘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사회생활을 영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 전 영역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그 규모면에서도 대규모로 수집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와 이해당사자의 수집 및 활용 사이에서 이해 상충 및 갈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존엄과 자유로

운 인격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시도로서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센서스에 있어 행정자료의 활용성 확보와 실용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를 수집, 이용, 관리 및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유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해 공유자원인 행정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법·제도 측면에서 연구한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정보공개 및 정보공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계, 학력·경력, 사회적·경제적 지위 및 재산상태 등 개인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법인의 정보, 죽은 자의 정보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가 모두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개인의 식별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개인정보에는 직접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전자는 당해 정보만으로도 직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체로 얼굴(초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 홍채, 운전면허번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소, 전화번호, 직장, ID, 비밀번호, 소속, 성별, 나이 등이 해당된다. 한편 더 나아가 공개되지 않아 이용가능하지 않은 데이터만을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도 있다. 즉, 개인정보의 개념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정보와 개인과의 관련성 및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관련 국제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규범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내법에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1) 국내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5-1〉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정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6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대체로 비슷하다. 양자 모두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요소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행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하여 비문자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표 5-2〉 Weible의 개인정보 분류

분류	예시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명, 국적 등
가족정보	부모의 성명 및 직업, 배우자의 성명 및 직업, 부양가족의 성명, 가족구성원의 출생지 및 생년월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교육 및 훈련정보	학생기록부, 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전문면허증, 서클활동, 상벌사항, 성격 및 행태보고 등
병역정보	군번, 계급, 제대 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소유토지, 소유상점 및 건물 등
동산정보	자동차, 보유 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유가증권, 수집품, 고가의 예술품, 보석 등
소득정보	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의 원천 등
기타 수익정보	보험가입현황, 보험 수익자,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신용정보	대출상환, 저당권설정여부, 신용카드 연체 및 미납의 수담보설정 여부 등
고용정보	고용형태, 고용주, 회사주소, 상관의 성명, 직무수행 평가기록, 훈련기록, 상벌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본인 및 가족병력,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등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 가입, 클럽회원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량, 음주량, 취미의 종류, 여가활동, 도벽성향, 비디오 대여기록 등

2) 해외 법규범 속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각국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영국과 같이 명백히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홍콩의 예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처리가 실행될 수 있을 것(practicable)을 요구하여 보다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정보의 진실성이나 기록형식은 관계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나 EU 지침³⁰⁾과 같이 개인과 정보와의 관련성 및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별로 추가적으로 자연인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 개인의 생존 여부, 개인정보가 기록된 형식 등의 요소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5-3〉 해외 법규범 속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구 분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 제1조제b항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일체
EU 지침 제2조제a항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natural person)(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
영국 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data) 또는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 정보(information) 또는 데이터로부터 신원이 확인가능한 생존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식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처리하는 정보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주체의 인적·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표 5-3〉의 계속

구 분	개인정보의 개념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주체의 인적·물질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호주 프라이버시법 제6조	당해 정보(information) 또는 의견(opinion)으로부터 신원이 명백하거나 확실시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또는 의견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가 진실인지 여부 및 물질적 형태(material form)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캐나다 프라이버시법 제3조	모든 형식으로 기록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홍콩 개인정보법 제2조	생존하는 개인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데이터로서, 개인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데이터 접근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식의 데이터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1994년 1월 7일 국가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4724호)을 제정하였다.

1999년 1월 29일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의 열람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5715호).

2007년 4월 27일에는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

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통계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다(제8387호).

1.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2.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 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3.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4.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5.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6.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2007년 5월 17일에는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

과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8448호).

2008년 2월 29일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 2008년 2월 29일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8871호).

〈표 5-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3), 개인정보보호의 원칙(3의2)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4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4의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5),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6), 개인정보파일의 공고(7), 개인정보보호방침(7의2),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8),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9), 인터넷상의 본인확인(9의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10), 개인정보파일의 파기(10의2), 정보취급자의 의무(11)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처리정보의 열람(12), 처리정보의 열람제한(13),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14), 불복청구(15), 대리청구(16)
제4장 보칙	수수료 등(17), 자료제공의 요구 등(18),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18), 의견제시 및 권고(19),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20), 개인정보책임관의 지정(20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21),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22)
제5장 벌칙	벌칙(23), 양벌규정(2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25)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하거나,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등과 같이 비밀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을 두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다.



[그림 5-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률 체계

공공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통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이 관련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2005년 3월 24일 공표된 교육기본법중 개정법률에서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도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의료분야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개별법상의 행정자료 이용에 제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항).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제2항). 또한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항),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안 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제2항).

또한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제3항).

‘국민건강보호법’ 제83조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를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표 5-5>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구분	관련 법규	규 제 내 용
정부 기록 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 국가·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 보호 ○ 수집·처리·이용 과정상의 정보주체와 공공기관의 권리·의무 규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개인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관리 업무의 전산처리 시 사생활 보호
	통계법	○ 통계 작성 과정 시 개인, 단체 법인의 비밀보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사생활 침해목적의 감사, 조사 제한
	국가공무원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관련 사생활의 보호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	○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전기통신사업법	○ 개별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유용 금지 등
보건 의료 정보	형법의 비밀침해죄 (제316조)	○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기술적 침해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관련 사생활의 보호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소비자 정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유전자정보의 보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 규제 ○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규제 ○ 신용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증권거래법	○ 정보의 제공, 누설 금지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위치정보의 수집·제공의 범위, 오·남용 방지
은행법, 변호사법, 외국환거래법, 법무사법, 공중인법 등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보호	

<표 5-6> 공공 및 민간부문별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구분	기관명	근거법률	관할범위	주요기능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 법령 등의 정비,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심의 - 공공기관간 의견조정 사항 심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파일 보유 공공기관 접수·공고 - 의견제시 및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기관 민원사무 일반	- 민원사항 안내·상담 및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 침해 일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침해구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민간부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 침해 일반	- 분쟁조정 신청·접수 - 사실조사 및 청문 - 합의권고, 분쟁조정 - 위법사실통보 등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업자, 호텔, 항공사, 학원 등	- 상담 및 고충처리 - 교육·홍보- 기술적 자문 등
	정보통신부	상동	상동	- 법률 제·개정 및 기준제정 - 시정 권고 및 명령 - 과태료부과 등
	금감위·금융감독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거래	- 상담 및 피해구제 - 시정 권고 및 명령- 기준 제정 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거래	-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소비자거래		- 상담 및 합의권고

2. 정보공개

가. 정보공개법 연혁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이다. 이 법은 소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제5242호). 이는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2004년 1월 29일에는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7127호).

2005년 12월 29일에는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체도를 도입·시행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7796호).

2006년 10월 4일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8026호)

2007년 1월 3일에는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8171호).

2008년 2월 29일에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제8854호),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제8871).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된 나라일수록 정보공개에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1766년에 이미 프레데스자유법 안에 정보공개원칙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핀란드도 그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정보공개제도를 채용(현행법은 1951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1966년,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970년,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는 1982년에 정보공개의 제도화가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정보공개의 원칙(3), 적용범위(4)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청구권자(5), 공공기관의 의무(6), 행정정보의 공표 등(7),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8)
제3장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정보(9), 정보공개 청구방법(10), 정보공개여부의 결정(11), 정보공개심의회(12),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13), 부분공개(14), 정보의 전자적 공개(15),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16), 비용부담(17)
제4장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18), 행정심판(19), 행정소송(20),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21)
제5장 정보공개 위원회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22), 위원회의 구성 등(23), 제도총괄 등(24), 자료의 제출요구(25), 국회에의 보고(26), 위임규정(27)

나.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문제이다.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확대이다.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는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의 국정 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문제이다.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 정보공개에의 문제점

행정정보공개는 장점도 많지만 행정정보 공개제도 도입 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① 국가기밀의 침해, ② 개인정보의 침해, ③ 범죄자나 그 집단의 악용, ④ 정보공개에 따른 행정부담의 증가 및 업무수행의 지장 초래, ⑤ 공무원들의 사기위축과 소극적인 업무추진, ⑥ 정보접근의 형평성문제 등을 들고 있다(박영기,1992:성도경,1997).

행정정보공개를 부정하는 측면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생활 정보의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이다. 현대의 다양한 정보체계에 의한 개인정보의 대량적 수집, 관리 및 활용의 용이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대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서 알권리가 강조되고 그에 따라 행정정보공개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방비적인 개인정보의 유출 내지 공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유지에 필요한 프라이버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보공개에 따른 주요 외교, 국방, 안보정책 내용 등 국가기밀의 무분별한 유출로 심각하게 국익을 손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시 국가기밀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비밀 수호 의무와 관련된다. 즉, 지방공무원법 제 5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 60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공무원이 엄수할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밀지정의 절차,비밀사항의 종류·성격, 비밀로 다루어야 할 비밀지정의 합리적인 사유’ 등도 명확히 법규로 규정함으로써 민주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정보공개가 행해지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즉,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기밀의 침해위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부담증가, 신원노출의 우려로 정보제

보자나 임의 제보자가 정보제보를 기피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수집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 인력충원 · 구제절차 · 소송 · 경비 등의 행정부담이 증가하며 정보공개 청구민원이 쇠도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공무원들은 사기가 위축되고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을 낳을 수 있다.

라.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는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나,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무를 지닌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은 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11조).

한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

3. 정보공유

가. 정보공유의 개념

정보공유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일정한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 또는 그러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이용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각 기관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회의형태로 의견을 교환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문서를 요청함으로써 정보를 연계 또는 공동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는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과 기관 혹은 조직과 조직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가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업무수행상 또는 업무목적상 자체 조직 내에서 문서 또는 전자매체의 형태로 생성·습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이해되는 행정정보를 소관 직무과정의 일환으로 기관 내 부문 및 기관 외 부문 또는 기관과 개인 사이에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3월 28일에 제정된 후 2001년 6월 30일 폐지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5-8〉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적용범위(3), 행정기관의 책무(4), 공무원의 책무(5)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국민편익중심의 원칙(6),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7), 전자적 처리의 원칙(8), 행정정보공개의 원칙(9),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10),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1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12), 중복투자방지의 원칙(13),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14), 시책의 수립·시행(15)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	전자문서의 작성 등(16), 전자공문서의 성립 등(17), 전자문서의 송·수신(18),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19), 행정전자서명의 인증(20), 행정정보공동이용(2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22),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22의2), 행정정보취급·이용자의 의무(22의3), 행정지식관리(23), 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24), 표준화(25),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2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28), 전자적 업무수행(29), 온라인 원격근무(30), 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31)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전자적 민원처리(33),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33의2), 비방문민원처리(34), 신원확인(35), 전자적 고지·통지(3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37), 수수료 등(38), 전자적 급부제공(39),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39의2),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39의3)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	종이문서 등의 감축(40), 문서업무감축계획(41),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2), 감축실적의 공표(43), 문서감축위원회(44),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44의2)
제6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45), 전자정부사업의 지원(45의2),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45의3), 성과평가(46), 시범사업의 추진(47),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48), 정보화책임관협의회(4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50),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50의2)
제7장 보칙	권한의 위임·위탁(51), 산하기관 등의 정보화(52), 벌칙(5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54)

나. 정보공유의 필요성

전자정부법은 제2장에서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으로 국민편의중심(제6조)·업무혁신 선행(제7조)·전자적 처리(제8조)·행정정보 공개(제9조)·행정기관 확인(제10조)·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개인정보보호(제12조)·중복개발방지(제13조)·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제14조) 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제1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는 법 제6조 국민편의중심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법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등과 연결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능률성 증진은 물론이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불필요한 서류제출부담 경감에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문서감축을 통한 전자적 행정처리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회피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귀결되는 전자정부사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 정보공유의 대상 및 범위

국가기관 내 개인정보 전산화가 확대됨으로써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잘못된 정보의 입력 및 전

산정보의 유출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의 양산을 억제하는 규범수립이 요청된다.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함께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개인 정보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유는 대규모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호 제공해주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동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각 행정기관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그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5-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확인에 관한 국가유공자등록 정보	국가 보훈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에 관한 정보	건설교 통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여권법」 제4조에 따라 발급한 여권에 관한 정보	외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에 관한 정보	통상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에 관한 정보	

<표 5-9>의 계속

공공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공공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에 관한 정보	법무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건설교통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정보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관한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부동산등기 등록의 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보	
「인감증명법」 제4조에 따른 개인 인감증명에 관한 정보	행정안전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신고에 관한 정보	
「상훈법」 제2조에 따른 상훈 수여의 증명에 관한 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관한 정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관한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 제195조에 따른 토지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관한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에 관한 정보	

<표 5-9>의 계속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지방세법」 제195조에 따른 건축물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관한 정보	행정 안전부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대지의 사용 검사에 관한 정보	건설 교통부
「지방세법」 제195조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관한 정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에 관한 정보	해양 수산부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대장에 관한 정보		「선박법」 제26조의2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에 관한 정보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야대장에 관한 정보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관한 정보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도에 관한 정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정보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야도에 관한 정보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정보	산업 자원부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관세청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광업원부에 관한 정보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에 관한 정보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에 관한 정보		「병역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적관리에 관한 정보	병무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	경찰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보건 복지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에 관한 정보	특허청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정보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표 5-9〉의 계속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보유 기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환경부	「디자인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특허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에 관한 정보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에 관한 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한 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 따른 건물등기부에 관한 정보	
「소득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세액의 납세사실에 관한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기부에 관한 정보	대법원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증명에 관한 정보	국세청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휴업사실에 관한 정보		「상업등기법」 제5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에 관한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사실에 관한 정보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인감에 관한 정보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정보	국세청	「호적법」 제10조 및 제124조의4에 따른 호적부에 관한 정보	대법원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호적법」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제3절 정보화의 저해요인과 개인 식별번호

1. 정보화의 저해요인

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개인에 있어 개인정보제공은 사이버 활동의 필수 요건으로 개인정보는 자산, 재화로 인식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원인은 타인 정보사용에 대한 욕구(익명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도용이나 고객정보 해킹 및 음성적 거래, P2P 등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기업들도 타겟 마케팅과 CRM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확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진다. 기업에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원인은 첫째, 인식 및 관리 부주의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통신시장의 포화로 시장 경쟁의 과열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게 노출되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많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 또는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 고도화로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형태가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원인은 인식 및 관리 부주의,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을 문제 삼지 않는 풍토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과 내부 취급자에 의한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제도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행력 및 정책 대안 마련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 원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다. 개인이 아무리 주소지를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면 추적할 수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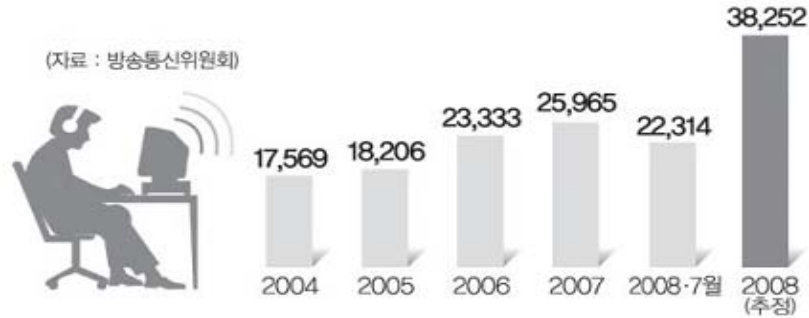
리는 개인을 식별하는 완전한 ‘키(Key)’라고 할 수 있다.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바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목적 외 열람 및 조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는 유력대선 후보의 납세·진료기록을 업무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열람하거나 면사무소 직원이 친정언니 친구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 주는 사례 등이 있었다(2007년 9월, 10월). 두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도적인 유출 및 유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는 공익요원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2007년 12월). 세 번째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들 수 있다. 이는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게시자가 공시를 송달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명단 자료를 실수로 게재하거나 홈페이지를 잘못 설계하여 전문검색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이다. 네 번째는 해킹 등 기술적 방법에 의해 불법으로 정보를 절취 및 훼손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해킹 SW에 의해 중국 포털에 노출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는 2008년초부터 잇따랐다. 옥션 회원 1,081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단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수백 개의 텔레마케팅 회사에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침해당했다고 상담해 온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07년의 경우 9,086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7,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08년 5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72만 건이 유출된 것이 드러났는가 하면 3월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7,617명의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삭제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들어 지난 7월까지 22,314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가 발생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5,965건의 86%에 이르렀다.



[그림 5-3]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표 5-10>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단위 :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 개인정보 무단수집	260	564	1,140	2,565	1,166
- 개인정보 무단제공	337	784	916	917	1,001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8,058	9,163	9,810	10,835	9,086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795	2,312	771	923	865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6,374	2,768	4,401	6,355	12,497
- 기타	1,953	1,978	1,168	1,738	1,35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올해 발생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신용정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가 54.4%(12,140건)로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29.3%(6,548건), 기술적 조치 미비로 인한 누출이 4.5%(1,001건),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3.1%(68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 발생한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역추적한 결과 4,1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규모로만 본다면 한 해 동안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표 5-11〉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피해 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수, %)

침해 유형	2006년	2007년	구성비	증감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 정보누출 등	632	522	2.0	-17.4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 정보 미파기	266	146	0.6	-45.1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923	865	3.3	-6.3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484	461	1.8	-4.8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3	14	0.1	-39.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0,835	9,086	35.0	-16.1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신용정보침해 등)	6,355	12,497	48.1	96.6
계	23,333	25,965	100.0	11.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나. 정보공유의 저해요인

성공적인 정보공유는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는 공공정보화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공유 저해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바 있다(2007년 4월). 이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로서 실제 현업에서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정부(2005년 10월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2006년 9월 조사) 공무원 각각 1,2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과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앙공무원들의 정보공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첫 번째로 보안의 문제가 매우 중대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각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신뢰부족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의 해결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세 번째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고비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보제공에 대한 직권 부족과 정보공유 시 자료왜곡에 관한 염려가 뒤를 이었다. 전산기기의 호환성문제, 책임소재 불분명 및 법적·제도적 근거부족 등도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표 5-12〉 중앙공무원에 대한 정보공유 저해요인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요인	표본수(명)	평균값	순위
보안문제	1,189	3.61	①
각 정부부처 간 협력 및 신뢰부족	1,192	3.44	②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고비용	1,193	3.33	③
요청된 정보제공에 대한 직권의 부족	1,192	3.27	④
정보공유 시 자료왜곡의 문제	1,191	3.27	⑤
개인정보 보호규정 미약	1,193	3.21	⑥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기기의 호환성문제	1,191	3.16	⑦
책임소재 불분명 및 법제도적 근거 부족 (국회지원부족 등)	1,186	3.14	⑧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보안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및 법적제도의 근거부족, 그리고 각 부처간 협력 및 신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책임소재의 불분명 및 법제도적 근거부족(국회지원부족)’의 문제를 정보공유 장애의 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공유 및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나 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정보공유 시 자료왜곡의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5-13〉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보공유 저해요인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요인	표본수(명)	평균값	순위
보안문제	1,200	3.70	①
각 정부부처 간 협력 및 신뢰부족	1,199	3.46	③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고비용	1,199	3.40	④
요청된 정보제공에 대한 직권의 부족	1,197	3.34	⑥
정보공유 시 자료왜곡의 문제	1,199	3.24	⑧
개인정보 보호규정 미약	1,199	3.40	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기기의 호환성문제	1,198	3.28	⑦
책임소재 불분명 및 법제도적 근거 부족 (국회지원부족 등)	1,196	3.51	②

두 개의 조사에서 모두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으로 보안문제, 각 부처 간 협력 미흡의 문제, 정보제공에 드는 고비용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정보화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부처 간, 부서 간 정보공유가 필수적 조건이며 이러한 정보공유를 좀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부처 간 업무연계 및 업무 협의를 통한 협력 및 신뢰가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공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개인 식별번호

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는 법률 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이 공포·실시되면서 1962년에 등장했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962년 5월 제정 당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1차 개정 때 시행령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나타났다. 개인고유 일련번호체계인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명칭만 ‘주민’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열세 자리의 숫자로 작성’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전 국민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전국적인 신분증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모든 국민에게 번호가 주어진 이후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번호가 부여된다. 초기의 주민등록번호는 열두 자리로 지역을 나타내는 앞의 여섯 자리 숫자와 거주세대와 개인번호를 나타내는 뒤의 여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1975년 8월 26일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표시하는 열세 자리 숫자 체계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조에 주민등록번호 작성에 관한 언급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의 여섯 자리와 성별·지역·등록순서 등을 나타내는 일곱 자리로 조합된다. 주민등록번호의 대표적인 특징은 각 개인이 하나의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준통일 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통일 식별번호는 현대사회에서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정리·종합한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여 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추적하여 악용할 소지도 있다. 개인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다른 정보들과

연동될 위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도 문제다. 즉,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등재순위,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연령·성별 노출을 꺼리고 주민등록번호 요구 때마다 곤란함을 느끼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총 142가지 민원서류양식 중 108가지 민원서류양식(76%)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국민을 확인하고 식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조합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연동이다. 즉, 산재해 있던 개인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축적·수집·관리되는 것을 뜻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이용하여 정보들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의 ‘열쇠’가 되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꿰어 나가는 역할을 할 위험도 있다.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존재하며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 즉,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방식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도용)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일반 이용자는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소유자임을 웹사이트에 증명해야 되는 불편이 따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비단 회원가입 불가로 인한 웹사이트의 이용제한이나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도용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정신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방식은 웹사이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를 통한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위하여 휴대폰 SMS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명확인만 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웹사이트에 남아 유출되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제9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내지 부정사용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외국에서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나. 다른 나라들의 개인 식별번호

1)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s)

사회보장번호(SSNs : Social Security numbers)는 the Social Security Act (1953년)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사회보장계획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43년 Roosevelt가 연방기관이 새로운 기록유지 제도 (record-keeping systems)를 만들 때 이 번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Executive Order 9397에 서명한 이후 1961년 국세청(IRS)은 이를 납세자번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The privacy Act(1974년)은 정부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SSNs를 사용하거나 그 번호개시를 요청할 때에는 그 인증(authorization)을 요구하였고 이를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 여부를 승인받도록 했다(1975년). 나아가 The Tax Reform Act of 1976에서는, 주나 지방의 세금, 복지, 운전면허, 각종차량면허 등에 있어서 동일한 여부 확정을 짓기 위하여서는 번호사용에 대한 등록인증이 요구되었다. The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dion(1977년) 등이 그것이다.

SSNs의 구조는, 9개 숫자(nine digits)로 되어있으며 보통 3부분으로 나뉘어서 “-”(AAA-GG-SSSS)에 의해서 구분되어 표시된다. 처음 3숫자

영역은 지역번호 (area number)이며, 가운데 2 숫자는 귀속공동체번호 (group number)이고 그리고 마지막 4숫자는 일련번호(serial number)이다. 이는 생년월일까지 적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르나 그 일반적인 구조는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가 당사자 식별의 측면에서는 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번호 부여 작업은 적어도 2번은 바뀌어 왔지만, 1965년까지 귀속공동체번호의 반 정도가 사용되었다. 1972년 전에는 작업장 사무소에서 할당하다가 그 이후에는 중앙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지역번호는 지리적 위치 (geographical location)에 따라서 할당된다. 이는 주 또는 준주의 영역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에서는 연방이나 주정부의 기관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사회보장번호의 제시가 필수적인가 임의적인가,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요구가 실정법 내지 다른 권한에 근거한 것인가, 제공된 사회보장번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어떠한가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는 그 발급 체계에서부터 조립방법까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보장번호의 발급체계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출생과 더불어 일률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고 부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또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자체가 개인의 필수적인 정보를 외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서 양국의 번호체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특별한 보호로, 법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법원은 선거인명부의 등록시에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국가는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정보공개 시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는 공적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단 사회보장번호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사회보장번호는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로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개인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조합방법에 있어서도 번호 자체가 생년월일로 이루어져 있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성별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번호의 부여와 관리체계도 국가가 직접 관여하도록 되어있어 이 점에서도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관치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의 표준통일 식별번호는 현재 조세, 사회보장, 병무행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행정작용에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는 국민의 편의와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시와 통제를 위해 시작되었던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매칭코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비록 대칭코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는 데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의 범위가 한층 줄어들게 된다. 또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개인 식별번호의 사용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처리목적, 신원보안의 중요성, 기타 중요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도록 되어있다.

3)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사회보험번호(SIN : Socia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회보험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

한되어 있는데, 벌금부과, 소득세징수, 실업급여 등 15개 행정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보험번호 수집 등의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상회하는 사회적 이득이 있음이 규정된 경우에만 사회보장번호의 수집·사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번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 시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야 한다.

4) 영국

영국은 양차에 걸친 대전의 기간 동안에는 일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있으나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서비스에 등록하면서 개인 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식별번호는 사회보장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비록 영국정부가 꾸준히 표준통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많은 논란 속에서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5) 독일

독일 역시 우리의 주민등록법과 같이, 강한 신분증명제도를 지니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개개 국민의 국가귀속을 인증하여 주고 자기식별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바로 ‘신분증명법(Gesetz über Personal -ausweise)’이다. 이에 따르면 (법 제1조 제1항), 독일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독일인, 즉 일반적으로 독일국적을 가진 자는 16세에 이르면 일반적인 신고의무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진다. 신분증명은 사진을 붙인 통일된 모양으로 교부된다. 그것은 일련번호로서 부여된다. 증명은 신분증명서를 가진 자의 사진에 대하여 동시에 부여된다. 그리고 그 서명은 그 사람에게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타적으로 증명한다. 즉 ① 성과 이름, ② 세례명, ③ 박사학위, ④ 휘장명/예명, ⑤ 출생일시와 장소, ⑥ 신장, ⑦ 안색(눈의 색깔), ⑧ 현주소, ⑨ 국적 등이 그것이다.

위의 신분증명에 대한 자동기계적 관독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는 신분증명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동일성증명서

(Identitätskar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나타내는 약어 IDD, ② 성, ③ 세례명, ④ 박사학위, ⑤ 신분증명의 일련번호(이는 증명기관의 기관식별 숫자와 일련번호로 조합된 증명번호의 부여로 이루어진다), ⑥ 독일인으로서의 자격을 나타내는 약어 D, ⑦ 출생일자, ⑧ 신분증명의 유효기간, ⑨ 검증번호, 그리고 ⑩ 공란등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증명서의 모양은 연방의회의 필요한 동의를 받은 법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조 제5항). 신분증명은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신분증명법에 관련된 정보보호규정에 의하여 신분증명이 지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지자의 본인에 대한, 폐쇄된 열거 정보를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다(법 제3조). 그리고 일련번호와 검증번호가 그러한 정보의 시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에 대한 자동기계적 접근 이용과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자동기계적 저장에 관하여서는 그 한계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 된다(법 3조a). 비공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일련번호에 의한 정보접근이 불허된다(법 4조).

6) 프랑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제4절 통계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유 현황

1. 통계법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②). 이러한 통계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제4조 제3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제5조에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6조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해당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2007.5.17).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유, 벌칙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

제27조 제3항에서는 통계의 공표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한 제31조 제3항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제1항),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제34조)와 관련하여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유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한 제2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제2항).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칙 제35조에서 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벌칙

제39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또한 제40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①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 그리고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42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표 5-14〉 통계법상의 개인정보 및 정보공유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2조③	기본이념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보급·이용
제4조③	국가 등의 책무	응답자의 부담 최소화, 비밀보호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이용·보급에 관한 타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27조③	통계의 공표	공표의 범위 제한규정
제31조③	통계자료의 이용	식별의 제한
제33조①	비밀의 보호	비밀보호 규정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업무목적외 사용·제공 금지
제39조	벌칙	통계자료 수집·제공 위반 시 벌칙 규정
제40조	양벌 규정	"
제41조	과태료	"

〈표 5-15〉 통계법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기본이념(2), 정의(3), 국가 등의 책무(4), 다른 법률과의 관계(5)
제2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6),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7),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8), 정기통계품질진단(9), 수시통계품질진단(10), 자체통계품질진단(11),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12), 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13), 국제협력(14)
제3장 통계작성 지정기관 및 지정 통계의 지정 등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15),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16),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17)
제4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통계작성의 승인(18),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19), 통계작성의 협의(20), 통계작성의 권고(21), 표준분류(22),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23), 행정자료의 제공(24), 자료제출명령(25), 실지조사(26), 통계의 공표(27), 통계의 보급(28),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29), 통계자료의 제공(30), 통계자료의 이용(31)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32), 비밀의 보호(33),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34)
제6장 보칙	자료제출요구(35),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36), 위임 및 위탁(37),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38)
제7장 벌칙	벌칙(39), 양벌규정(40), 과태료(41), 과태료의 부과절차(42)

2. 통계법시행령

통계종사자에 대하여 통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법 제30조) 및 통계자료의 이용(법 제31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서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8조). 또한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는 법 제2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9조).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 및 제공과 관련하여 제46조 제2항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보호를 위해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49조 ①).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서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0조 ①).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제2항).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표 5-16> 통계법시행령상의 개인정보 및 정보공유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6조	통계교육에 관한 내용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보호기법 등 교육
제38조⑤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행정자료 정보보호 조치
제39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행정자료 제공예외의 정당한 사유
제46조②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통계자료 제공방법에 관한 규정
제48조	통계자료의 보호	정보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마련 요구와 제공중지 및 제공범위 제한
제49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운영	통계자료의 제공관련 사항 심의
제50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정보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마련 요구

〈표 5-17〉 통계법시행령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2)
제2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책임관의 지정(3), 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4),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5),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6),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7),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8),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9),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10),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11),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12),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13),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14),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15),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16),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17)
제3장 통계작성 지정 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18),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19),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20),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21),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22), 지정통계의 지정취소(23)
제4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24),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25),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26),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27),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28),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29),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30),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31),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32),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33), 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절차(35), 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사유 및 내용(36), 표준분류 등의 명시(37),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38),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39),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40), 자료제출명령의 요청 및 처리(41), 통계의 공표방법 등(42),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지침의 제정(43),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44),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45),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46), 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47), 통계자료의 보호(48), 통계자료제공심의회회의 설치·운영(49),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50)
제5장 보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위탁(51),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52)
제6장 벌칙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53)

3. 통계자료제공규정(훈령)

이 규정은 통계청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공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비용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응답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통계자료 제공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미공표자료의 제공범위에 대해 통계청장은 자료제공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료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제5조 ②).

1.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 및 정도

미공표자료의 제공방법은 통계청장이 자료제공을 위하여 특별한 전산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관련 전문인력을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이 경우 이용자는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관리 및 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제9조 ③).

통계정보국장은 통계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미공표자료의 제공절차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제11조 ②).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또한 통계정보국장은 통계자료 제공 시 제2항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③).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 하에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둔다(제17조). 기능에 있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제18조).

1. 통계조사의 항목별 자료제공 범위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통계목적 등 자료이용 목적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미공표자료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자료제공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표 5-18〉 통계자료제공규정상의 개인정보 및 정보공유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9조③	미공표자료의 제공방법	세부절차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제11조	미공표자료의 제공 절차	통계이용자에게 준수사항 이행 요구
제17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설치	법령에 따른 설치
제18조	심의회 기능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기능 규정

〈표 5-19〉 통계자료제공규정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목적(1), 정의(2), 다른 규칙과의 관계(3)
제2장 자료제공 범위 등	공표자료의 제공범위(4), 미공표자료의 제공범위(5), 자료제공시점(6), 자료제공범위 변경에 따른 소급 제공 금지(7)
제3장 자료제공 방법	공표자료의 제공방법(8), 미공표자료의 제공방법(9)
제4장 자료제공 절차	공표자료의 제공절차(10), 미공표자료의 제공절차(11), 각 부서의 장 등의 자료제공(12)
제5장 자료제공 비용	공표자료의 제공비용(13), 미공표자료의 제공비용(14), 자료제공비용의 면제(15)
제6장 대행기관의 운영	대행기관의 운영(16)
제7장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17), 심의회의 기능(18), 심의회의 구성(19), 심의회의 운영(20), 수당 등의 지급(21)

4.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에 의거 통계청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안업무 체계’, ‘제3장 인원보안’, ‘제4장 문서보안’, ‘제5장 통신보안’, ‘제6장 정보보안’, ‘제7장 시설보안’, ‘제8장 보안지도 및 감독 등’, ‘제9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구성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5-20〉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적용범위(3)
제2장 보안업무 체계	보안심사위원회(4), 위원회 심의사항(5), 회의 및 의안제출(6),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 지정(7), 각 보안담당관 임무(8), 보안담당관 교체(9),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10), 보안업무심사분석(11), 정기보안진단(12)
제3장 인원보안	신원조사대상 및 기관(13), 신원조사 요청(14), 신원조사회보서관리(15), 외국인 채용, 접촉시 보안관리(16), 신원특이자 보안(17), 기능직 및 단순고용원 보안(18), 비밀취급인가권자(19), 비밀취급인가대상(20), 비밀취급인가자 업무범위(21), 비밀취급인가 절차(22), 서약(23), 비밀취급인가 제한(24), 비밀취급인가 해제(25), 비밀취급인가증 회수처리(26), 비밀취급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27), 출입증 발급 신청(28), 출입증 관리(29)
제4장 문서보안	비밀 분류(30), 비밀 요약(31), 비밀 합철(32), 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33), 비밀 발송(34), 수발담당자 유의사항(35), 비밀영수증 관리(36), 비밀영수증 작성(37), 접수비밀 재발송(38), 비밀 보관(39), 비밀보관용기(40), 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41), 비밀보관 책임자(42), 비밀 인계 인수(43), 비밀관리기록부 기록(44), 비밀관리기록부 갱신(45), 비밀관리부철 보존(46), 비밀문서 외주발간(47), 비밀문서 자체발간(48), 생산비밀 통제(49), 비밀 대출(50), 비밀 지출(51), 비밀 인계(52), 비밀 파기(53),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54), 비밀소유현황 조사(55), 전시비밀관리(56), 주요 통계자료 보안(57), 대외 제공자료 보안(58)
제5장 통신보안	국제통신 보안관리(59), 암호자재 보관책임(60), 암호자재 관리(61), 암호자재 인계인수(62), 암호자재 사용(63), 암호자재 긴급파기(64), 암호자재 사고(65), 통신보안장비 관리책임자 지정(66), 통신보안장비 보관(67), 통신보안장비 관리(68), 통신보안장비 사용(69), 통신보안장비 송신(70), 통신보안장비 수신(71)

〈표 5-20〉의 계속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6장 정보보안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72), 정보통신실 보호대책(73), 전산자료 보호대책(74), 비공개자료 보호(75), 전산자료 보호우선순위 부여(76), 보호등급별 보안대책(77), PC 관리책임자 지정(78), PC 보안관리(79), 사용자계정 관리(80), 비밀번호 관리(81), 전자우편 등의 보안관리(82), 비밀자료 등의 전자적 처리(83), 비밀자료 출력(84), 비밀자료 보관 및 관리(85), 비밀자료 입출력 컴퓨터 운용(86), 개인용·휴대용 컴퓨터 특별 보안관리(87), 보조기억매체 관리(88),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89), 정보통신시스템 감리(90), 상용망 등 외부망 연동(91), 정보통신자료 보호(92), 비밀자료 전송 시 보안대책(93), 암호프로그램 개발(94), 암호프로그램 운용(95), 암호프로그램 변경(96), 암호프로그램 취급자 지정(97), 암호프로그램 관리(98), 악성코드 방지대책(99),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100), 정보보안진단의 날' 운영(101), 원격근무 보안관리(102), 정보보안관리 수준 평가(103),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104), 정보통신 운용현황 통보(105),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106), 미검증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적합성 검증 요청(107),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관리자 지정(108),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관리(109),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목적 이외 사용제한(110),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제한(111),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용자 관리(112),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긴급사태 관리(113),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의 현황통보(114), 사이버공격 초동조치(115), 사이버공격 대응활동(116)
제7장 시설보안	보호구역 설정(117), 보호구역 보호대책(118), 보호구역 관리책임(119),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120)
제8장 보안지도 및 감독 등	보안교육(121),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122), 보안감사 보고사항(123), 보안사고 보고사항(124), 기타사항 보안대책(125)
제9장 보칙	정부통합센터와 협의 운영(126), 준용(127)

5.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절차(예규)

이 지침은 통계청의 현장조사 담당직원(정규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 단말대보안장비 접속방식의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절차’는 목적(1), 용어정의(2), 신청자격(3), 업무범위(4), 이용기관 담당자 지정(5), 등록·변경·삭제 절차(6), 이용자 교육 및 장애처리(7), 인증서 관리 및 분실 시 처리사항(8), 보안대책(9) 및 기타(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원격근무 지원시스템(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인터넷 등 외부에서 정부고속망 내부에 위치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한(Secure) 접속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및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전용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신원확인(인증) 및 가상사설망(VPN)의 통신내용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관리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이용자는 이용기관 및 이용기관의 업무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업무관련자로 이용기관을 경유하여 관리기관에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이용신청 및 이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전용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대상(공무원)이 아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이용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발급된다.

이용자 프로그램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며,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접속을 위하여 이용자의 피씨(PC) 또는 노트북에 설치가 필요한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전용 프로그램으로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보안장비(Gateway)와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을 수행한다. 대상업무범위는 통계청의 통계조사 입력시스템 및 전자조사시스템(CATI 등),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으로 하며, 정보화기획과 및 지방통계청(통계사무소)에서는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림 5-4]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흐름도

6. 주요통계 작성 및 공표관련 보안지침(예규)

이 지침은 통계청이 생산하는 주요 통계에 대하여 그 작성 및 공표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통계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범위는 통계청의 본청과 지방통계청·통계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직원이며(제2조), 적용 대상통계는 산업활동동향·소비자물가동향·고용동향 및 소비자전망조사결과에 적용한다(제3조).

적용기간은 지방청이 적용 대상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자료 등을 본청에 송부한 시점부터 본청에서 적용 대상통계를 공표한 시점까지로 한다(제4조). 적용 대상통계를 작성할 경우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안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자료의 집계 및 내검, 자료 확정, 보고, 인쇄, 공표의 5단계로 구분한다(제5조).

공통적인 보안사항으로 담당자는 적용 대상통계 작성 시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보안기간 중에는 외부 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야 한다(제7조).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행동 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

1.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의 폐지는 종이파쇄기로 폐기한다.
2. ‘말로만의 보안’이나 ‘너만 알고 있어’ 등의 형태로 자료를 유출하지 아니한다.
3. 자료유출의 주된 경로는 항상 내부에 있음을 명심한다.
4. 작업자는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방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항상 정리 정돈하고, 자료가 보관된 문서함은 반드시 잠근다.
5. 내방객의 사무실 출입을 최대한 억제한다.
6. 모든 컴퓨터는 반드시 부팅 패스워드를 적용하며, 화면보호기 기능과 암호를 설정한다.
7. 공유폴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다.
8. 바이러스 검색 및 예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부팅 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자동 업데이트한다.

9.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나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통계청장은 적용 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 통계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이 지침을 위반한 통계청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그 밖의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제10조).

7.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예규)

이 지침은 통계청 내부용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통계정보에 대한 전자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대국민 통계정보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통계DB의 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침은 총칙(제1장), 관리체계(제2장), 콘텐츠 관리(제3장), 시스템 개발 및 관리(제4장), 외부기관 콘텐츠의 관리(제5장)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문은 ‘제4장 시스템 개발 및 관리’의 제15조의 ‘보안대책’과 제16조의 ‘사용계정 관리’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는 정보화기획과장의 협조 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통계DB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제15조).

또한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부서의 콘텐츠담당자에게 "통계DB 콘텐츠 관리용 ID"를 부여하고, 콘텐츠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통계DB 콘텐츠 관리용 ID"는 콘텐츠 담당자별로 1개씩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 발급할 수 있다.

"통계DB 콘텐츠 관리용 ID"를 발급받은 자는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

〈표 5-21〉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적용범위(3)
제2장 관리체계	관리주체(4), 관리책임자의 임무(5), 개발책임자의 임무(6)
제3장 콘텐츠 관리	콘텐츠 등록(7), 콘텐츠 변경(8), 콘텐츠 갱신(9), 콘텐츠 공개(10), 콘텐츠 점검(11), 콘텐츠 현황보고(12)
제4장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13), 기술담당자의 임무(14), 보안 대책(15), 사용계정 관리(16), 서비스 일시중지(17)
제5장 외부기관 콘텐츠의 관리	외부기관 콘텐츠의 관리(18)

8. 통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예규)

이 규정은 각종 통계정보의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통계청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웹 보안 취약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발을 의뢰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0조③).

행정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제19조②). 그리고 자료 등록 등과 관련하여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절차상 보안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조④). 게시물의 삭제와 관련하여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등은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제22조).

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또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보안 등과 관련하여 제24조(개인정보보호), 제25조(ID 및 비밀번호 관리), 제26조(시스템 보안·백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5-22〉 통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적용 범위(3)
제2장 홈페이지 관리	관리체계(4), 관리책임자의 임무(5), 운영담당자의 임무(6), 중요사항의 결정(7)
제3장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시 준수사항(8), 서비스 제공(9), 프로그램 개발 등(10)
제4장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11), 장비 유지·관리(12),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13),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14), 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15), 외국어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16)
제5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17), 의견 수렴(18), 행정정보 제공(19), 자료 등록 등(20), 자료 점검(21), 게시물의 삭제(22), 팝업창 및 배너관리(23)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24), ID 및 비밀번호 관리(25), 시스템 보안·백업(26), 홈페이지 안내(27)

9.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

이 지침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생산된 전산 자료의 관리 및 청내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존 자료를 훼손·망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공용 자료 생성과 관련하여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심의회는 통계조사별 제공범위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인이나 사업체의 식별자(ID)와 미제공 항목 등을 삭제한 제공용 자료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자료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하며,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

또한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하며(제3항),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고(제4항), 이용신청서에 명시된 이용자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제5항).

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보존용 전산자료는 자료 소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등 자료제공부서장의 사전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제 16조). 또한 자료보관실의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자료보관실은 통계구역으로 지정하고 통계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반 보안대책을 시행한다(제17조).

〈표 5-23〉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적용 범위(3)
제2장 보존용 자료의 이관	보존용 자료의 작성(4), 보존용 자료의 범위(5), 보존용 자료의 이관(6)
제3장 보존용 자료의 관리 및 소산	보존용 자료의 재이관(7), 보존용 자료의 복제(8), 보존용 자료의 소산(9), 보존용 자료의 관리(10), 관리대장기록유지(11)
제4장 보존용 자료의 이용	제공용 자료 생성(12), 자료의 이용(13), 자료의 비밀보호(14)
제5장 보존용 자료의 보안	자료의 무분별한 복제 방지(15), 자료의 유출방지(16), 자료보관실의 보안(17)

10. 정보자산 보안관리지침(예규)

이 지침은 통계청 내부 정보자산이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되도록 분류하고 자산별 보안 등급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계청의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정보 :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으로 통계청이 생산 또는 입수하여 컴퓨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자산 : 통계청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통칭하

며, 정보시스템에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3. 기밀성(Confidentiality : C) : 비인가자가 임의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비인가자에게 임의로 정보가 노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이다. 정보자산 또는 데이터가 전송, 백업, 보관 중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4. 무결성(Integrity : I) : 비인가된 방법을 통해 정보를 변경 또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이다. 정보가 전송되고 저장되는 과정에서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가용성(Availability : A) : 권한을 가진 개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자산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성이다.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제4조에서는 정보자산 책임자를, 제5조에서는 정보자산관리자를 제6조에서는 정보자산 이용자를 지정 및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다.

정보의 보호등급은 ‘가’급 정보로부터 ‘다’급 정보로 분류하고(제10조),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정보자산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항(제12조)과, 정보자산의 이동 통제(제13조), 정보자산의 인수인계(제14조)를 규정하고 있다.

〈표 5-24〉 정보자산 보안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장	법 조항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적용 범위(3)
제2장 책임 및 권한	정보자산 책임자(4), 정보자산 관리자(5), 정보자산 사용자(6), 정보자산 관리 책임(7)
제3장 정보자산의 관리	정보자산의 분류(8), 정보자산 목록 작성(9), 정보의 보호등급(10), 정보자산의 중요성 평가(11), 정보자산 관리(12), 정보자산의 이동 통제(13), 정보자산의 인수인수(14)

〈표 5-25〉 중요성 평가 기준

보안 요구사항	내 용	평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유출되는 경우 통계청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자산 소유자인 해당 과 또는 담당자만이 접근 및 관리가 가능한 자산 <p style="margin-left: 20px;">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자산의 유출 시 통계청의 서비스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
기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유출되는 경우 통계청에 약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자산 소유 과/담당자 이외 관련 과 등 통계청 조직 내부에 국한하여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산 <p style="margin-left: 20px;">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자산의 유출 시 통계청의 서비스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유출되어 공개되어도 관계 없거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 조직 외부인이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산 ▪ 해당 자산에 별도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되어도 무방한 경우 <p style="margin-left: 20px;">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자산의 유출 시 통계청의 서비스에 영향이 없음 	하
무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변조 시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통계청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변조 가능성이 높고, 변조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힘든 경우 ▪ 해당 자산 정보에 대한 실시간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원래의 정보를 복구하기 힘든 경우 <p style="margin-left: 20px;">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자산의 변조 시 통계청의 서비스 중단 	상

〈표 5-25〉의 계속

보안 요구사항	내 용	평가 수준
무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변조 시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통계청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변조 가능성이 높고, 변조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힘든 경우 ▪ 해당 자산 정보에 대한 실시간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원래의 정보를 복구하기 힘든 경우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자산의 변조 시 통계청의 서비스 일부 중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 변조되어도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경우 ▪ 자산에 포함된 정보의 변조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보 변조 시 무결성 검증이 용이한 경우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자산의 변조 시 통계청의 서비스에 영향이 없음 	하
가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가용성 훼손 시,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통계청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자산이 사용 불가능할 때, 대체(백업) 자산이 없어 장기적인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 연중 24시간 무 중단 운영되는 자산(장비)으로써,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되어야 하는 경우 ▪ 해당 자산에 대한 장애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경우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고가의 장비이거나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장비(기간, 시간 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산이 사용 불가능할 때, 대체 자산을 투입하기까지 단기적인 업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연중 24시간 무 중단 운영되는 자산(장비)으로써, 장애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복구되어야 하는 경우 ▪ 장비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은 발생하지 않으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

<표 5-25>의 계속

보안 요구사항	내 용	평가 수준
가용성	예시)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 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증가의 장비이며 구입이 용이한 장비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산이 사용 불가능할 때, 대체 자산을 즉시 투입 하여 업무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연중 24시간 무 중단 운영되는 자산(장비)으로써, 장애 발생 시 수 시간 이내에 복구되어야 하는 경우 ▪ 장비 장애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성능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백업 장비의 경우 예시) - 일반적으로 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자산 의 경우 전자정보에 의존적으로 평가됨 - 저가의 장비이며 상시 구입 가능한 장비	

<표 5-26> 자산 중요성 평가 등급 기준표

중요성 등급		정보자산 중요성 지수 범위				
‘가’ 등급		8 ~ 9점				
‘나’ 등급		5 ~ 7점				
‘다’ 등급		3 ~ 4점				

구분		무결성(I) + 가용성(A)				
		2	3	4	5	6
기밀성(C)	1	3	4	5	6	7
	2	4	5	6	7	8
	3	5	6	7	8	9

11. 통계청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9조 제3항의 규정 및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의하여 우리 청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제3조에서는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소재(정보안담당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제4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제5조 저장자료 삭제에 대한 책임, 제6조 삭제방법의 지정, 제7조 삭제확인,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조치(제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5.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저장매체의 고장수리 또는 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 저장 자료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스템의 사용 기관·부서 및 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제8조).

〈표 5-27〉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매체 \ 저장자료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 또는 ㉡	㉠ 또는 ㉡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 또는 ㉡	㉠ 또는 ㉡	㉠ 또는 ㉡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 또는 ㉡	㉠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 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자기력보다 큰 자기력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0’·‘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제5절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

1. 비밀보호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통계법 제5조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적 지위관계에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리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 통계자료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계작성 목적이 아닌 통계자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추·감사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자료에 대한 요청·압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나. 검토 결과

통계법 제33조는 동법 제5조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규정과 개별법상의 주민등록법 제33조 제4 및 5항,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와 같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자료의 이용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반드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와 관련하여 자료의 비밀보호 조항은 통계조사 응답자의 성실응답을 담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한 조사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성실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고, 응답에 따른 부담 감소는 응답률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28〉 비밀보호관련법과 주요 내용

관련법	법조항	주요 내용
통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3 조 (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처리정보 의 이용 및 제공 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이하 생략)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생략)

〈표 5-28〉의 계속

관련법	법조항	주요 내용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	<p>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p>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생략)</p>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p>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생략)</p>

2. 행정정보의 공유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행정의 효율성, 국민 권리실현의 신속성, DB 구축 비용의 절감, 중복 투자 방지 등에 기여하는 전자정부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으로 국민편익중심(제6조)·업무혁신 선행(제7조)·전자적 처리(제8조)·행정정보공개(제9조)·행정기관 확인(제10조)·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개인정보보호(제12조)·중복개발방지(제13조)·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제14조) 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자료의 경우 통계법 제24조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 호 단서규정에서 따라 개인비밀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자료 등 개별 과세자료에 대한 제공이 불가능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 국세기본법 (법률 9131호)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본조신설 1996.12.30]

나. 검토 결과

행정자료의 공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통계법 제24조 규정이다. 개별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특별법 관계로 의제한다. 두 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 등과 같이 통계적 목적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3조 적용범위에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 규정을 둔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3항 제4호와 전자정부법 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및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제1항 2호의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네 번째는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해당 행정자료 작성기관의 개별법에 근거규정을 둔다.

첫 번째 통계법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특별법 관계로 의제하는 방법의 한계점은 ① 통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제24조 제2항의 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요청 및 제

공기관과의 협의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또한 ②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기 소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작성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산형 통계작성체계 하에서는 요청기관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의 지정통계는 통계청의 44종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61종, 지방자치단체 16종 등 모두 77종에 이른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방법 또한 첫 번째 방법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해당 행정자료 작성기관의 개별법에 ‘통계청이 통계작성을 위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기속규정을 두는 방법은 요청기관과 제공기관 모두를 기속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한 즉, ‘통계청이 통계작성 목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통계청장은 중앙통계행정기관으로서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i)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ii)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iii)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가능한 통계 등을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29〉 행정정보관련법과 주요 내용

관련법	법조항	주요 내용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 의 제공)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및 ⑤ 생략</p>
통계법	제30조 (통계자료 의 제공)	<p>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한 방문조사·전화조사·우편조사 등에 따른 표본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 5-29〉의 계속

관련법	법조항	주요 내용
전자 정부법	제3조 (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다. 국내외 입법 사례

국내 입법사례를 보면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되 법률 전체를 특별법 지위로 규정한 경우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 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제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이 있으며, 특정규정(범위)을 특별법 지위로 규정한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제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 ③)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하여 법률 전체를 규정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3조①)이 있으며, 특정범위만을 규정한 경우는 ‘과세법’(제4조①)이 있다.

해외의 경우는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사업자자료를 포함한 세무자료를 기업관련 통계에 활용 중이며,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경우에는 사업체 설립신고자료 및 세무신고자료를 통계청과 국세청으로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표 5-30〉 사업자등록자료 및 세무신고자료 활용국가

구분	활용국가
사업자등록자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세무신고자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표 5-31〉 주요국의 과세자료 활용 관련 법적 근거 예시

국가	근거 조항	요지
영국	부가가치세법 제91조 (Value Added Tax Act, 1994)	· (통계작성목적을 위한 정보공개)국세청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조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 및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상호), 매출액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법 제58조 (Finance Act)	· (통계작성목적을 위한 정보공개)국세청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용주의 성명, 주소, 피고용자수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및등록서비스법 제42조~제54조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효율적인 운영)영국등록장관, 주지사, 국세·관세청장 등은 출생·사망정보, 건강 관련 정보, 국세 및 관세 정보 등을 통계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의 제공이 기존 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내각총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덴마크	사업자등록에관한법 제1조	· (등록관리 책임)통계청은 자영업이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데이터(식별번호 포함) 축적 등을 위한 등록관리의 책임을 진다.
미국	국세법 제6103조 (US Code Title 26 Ch.61 Sec.6103 j)	· (통계적 활용)국세청장은 상무부 등이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주	소득세법 제16조 제4항 (Income Tax Assessment Act Sec.16 ga, gb, 1936)	· (비밀보호의 예외)비밀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통계청에 고용주의 성명, 주소, 사업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5-32〉 외국의 행정자료 활용관련 법적 사례

국가	근거 조항	요지
프랑스	의무통계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08.8.6)	· (행정정보 제공의무) 모든 공공기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이나 법인에 관한 정보를 건강이나 성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INSEE와 각 통계작성기관에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영국	통계및등록서비스법 제42조~제54조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효율적인 운영) 영국등록장관, 주지사, 국세·관세청장 등은 출생·사망정보, 건강관련 정보, 국세 및 관세 정보 등을 통계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의 제공이 기존 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내각총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국가통계 기본체계 3.6.~7. (Framework for National Statistics, 2000)	· (효율적인 운영) 국가통계는 기존 행정자원을 포함한 기존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용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경우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인구조사 및 통계조사를 제한하여 자료제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1조 (Value Added Tax Act, 1994)	· (통계작성목적에 위한 정보공개) 국세청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조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 및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상호), 매출액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법 제58조 (Finance Act)	· (통계작성목적에 위한 정보공개) 국세청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용주의 성명, 주소, 피고용자수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	연방통계법 제8조	· (행정자료 활용) 연방 행정기관들이 통계작성 목적이 아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연방통계청은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연방통계법 제16조	· (비밀보호) 연방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통계청과 지방주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센서스준비법 제11조	· (주소제공) 주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각 신고관청은 표집된 건물거주자의 성, 이름, 출생연도, 주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5-32〉의 계속

국가	근거 조항	요지
이탈리아	EC 규정 제322호 제16조	· (행정자료의 활용)유럽공동체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가별 담당기관과 유럽공동체 담당기관은 각 행정부의 활동분야별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Council Regulation(EEC) 2186호 제7조	· (행정자료에의 접근권한)각국 통계기관은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국가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수집권한을 갖는다.
노르웨이	통계법 제3조	· (행정자료 접근권한)통계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는 행정자료처리시스템을 국가통계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1조	· (행정자료 접근권한)통계청은 자료수집에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행정자료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핀란드	통계법 제4조	· (자료수집원칙)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일반 행정업무 수행 중에 구축된 자료와 고용인, 자영업자, 기업 및 재단의 일반적인 활동의 결과로 작성된 자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통계법 제14~15조	· (자료제공의무)비밀준수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지자체, 법인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핀란드 통계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덴마크	통계법 제1조	· (통계청의 임무)통계청은 중앙 공공등록소(central public register)의 설립 및 이용을 감독·지원하고 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 제1조	· (등록관리 책임)통계청은 자영업이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데이터(식별번호 포함) 추적 등을 위한 등록관리의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통계법 제6조	· (자료요구권한)수석통계관은 통계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관할 당국이 보유한 상세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또는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표 5-32〉의 계속

국가	근거 조항	요지
미국	센서스법 제6조 (US Code Title 13 Sec.6)	· (행정정보 요구권한)상무부장은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정부기관, 주정부 등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법 제6103조 (US Code Title 26 Ch.61 Sec.6103 j)	· (통계적 활용)국세청장은 상무부 등이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캐나다	통계법 제3조	· (통계청의 임무)통계청은 정부부처 활동으로부터 도출되는 통계를 포함한 통계정보의 수집, 축적 및 발간 시 여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3조	· (행정자료에의 접근)각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정보의 수집 및 검증 등을 위해 통계청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허가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32조	· (벌칙)행정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통계청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자료접근을 거부 또는 태만하는 경우 최대 1천 달러의 벌금형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구류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호주	통계법 제6조	· (통계청의 임무)통계청은 공공기관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통계적 목적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통계정보의 수집, 생산에 있어서의 기관간 중복을 방지·조정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4항 (Income Tax Assessment Act Sec.16 ga, gb, 1936)	· (비밀보호의 예외)비밀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통계청에 고용주의 성명, 주소, 사업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뉴질랜드	통계법 제32조	· (자료제공의무)통계조사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누구나 통계청장이나 통계청장에 의해 또는 통계청장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통계청의 모든 직원에게 자신이 아는 한도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통계DB의 연계·통합

가. 현황 및 문제점

전자정부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통합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필요하다. 수직적 통합이란 동종의 행정업무를 연계시켜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수평적 통합이란 이종의 업무에 대해서도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처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민 서비스업무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기적 통합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시스템이 상호연계·통합되고, 이를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이에 사용되는 데이터, 코드, 시스템 등이 정해진 기준(표준)에 따라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행정자료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행정적 목적에 부합하게 대상과 변수들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 검토 결과

통계법 제28조는 통계의 보급과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통합을 위해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DB 분류코드 즉, 한국 행정구역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분류 등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표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표 5-33〉 통계DB 구축기관수

(단위 : 개)

DB 구축기관	2006년	2007년	2008년p	계
계	40	47	45	132
호스팅 ¹⁾	26	40	20	86
보급 ²⁾	7	2	6	15
자체 ³⁾	7	5	19	31

* 2008년 기관수는 행정정보DB구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5-34〉 국가통계포털 이용현황

(단위 : 천 명, 천 건, 천 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1월	2008.2월	2008.3월
방문자수 (월평균)	-	1,883 (188)	299	245	432
페이지뷰 (월평균)	10,247 (854)	70,920 (7,092)	8,462	6,270	11,289
수록시계열	123,995	148,964	150,276	150,510	150,891

주: 1. 2007년 3월이후 국가통계포털 이용실적임

2. 수록지표는 2008년 3월말 기준으로 26,101개임
(통계청 5,642개, 외부기관 20,459개)

- 1) 서버(주전산기) 및 통계DB시스템 미 보유기관
- 2) 서버(주전산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통계DB시스템만 미 보유한 기관
- 3) 자체적인 서버를 이용하여 통계DB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4. 행정정보 공유자원의 운영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제3절에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끄기 위해서는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부처간 업무연계 및 업무협의를 통한 협력 및 신뢰성 확보,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 통계법 및 시행령에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유관련 조항이 있으나, 세부 규정에 있어서는 훈령·예규 등에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제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자료제공규정(훈령)은 통계청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공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비용 등을,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절차(예규)는 통계청의 현장조사담당직원(정규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이 단말대보안장비 접속방식의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통계 작성 및 공표관련 보안지침(예규)는 통계청이 생산하는 주요 통계에 대하여 그 작성 및 공표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지침을 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예규), 통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예규), 정보자산 보안관리지침(예규), 통계청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예규) 등은 통계청 내부의 통계정보에 대한 전자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영역의 기본적 법령에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거나, 일부분에서는 개별적인 입법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통계청 내부에 한정된 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청 외의 자에 대해 적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의제도 입법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에서는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나. 검토 결과

기관 간 및 부서 간 행정자료의 공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오용 등 자료제공기관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확보를 위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유, 위반 시 벌칙 규정 및 피해구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규정 즉,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에는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자료수집주체와 수집방법, 자료보관단계에서는 자료관리주체와 자료보관형태, 자료접근단계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승인과 아이디 및 암호관리, 자료처리단계에서는 다운로드 등에 대한 제한과 입출력자료에 대한 폐기, 자료제공단계에서는 자료제공허용범위 등과 위반 시의 처벌 및 피해구제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주요 업무단계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준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5〉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안전성, 최신성 보장
3. 목적 명확화 원칙	· 처리목적의 명확화
4. 이용제한의 원칙	·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의 활용 금지
5. 안전보호의 원칙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7. 개인 참가의 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1) 수집단계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 근거가 명확하고 수집사실이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수집을 제한하여야 하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2가지 원칙은 민감정보수집 금지의 원칙과 과다보유 금지의 원칙이다.

첫째, 민감정보수집 금지의 원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과다보유금지의 원칙은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범위, 보유 및 파기 기간 등도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관계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수집은 첫째,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수집인가, 둘째, 법률의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있는가, 셋째, 수집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넷째, 수집목적에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다섯째,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안내내용은 첫째, 개인정보수집의 목적과 법적 근거,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또는 업무, 셋째,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넷째,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안내방법은 관보, 전자문서, 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자료수집은 기존의 운영방식과 같이 자료제공기관과의 사전접촉은 소관과가 담당하고, 자료접수 자체는 행정정보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

2) 보유단계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 직제,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는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보유가 가능하다. 수집 시 안내된 보유기간 외 보유할 경우 기간을 넘어 보유하게 된 목적, 법적근거,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시 알려 주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파일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대장에의 기재사항은 첫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둘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셋째, 보유기관의 명칭, 넷째,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범위, 다섯째,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통상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 여섯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간, 일곱째,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사유, 여덟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정보열람을 위하여 취할 조치사항은 첫째,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장소 지정, 둘째,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열람장소 고시, 셋째, 열람접수 및 처리부서 내 개인정보파일 대장 사본 비치 등이다.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자료관리주체는 자료를 직접 인수한 행정정보팀이 관리부서가 되며, 행정정보팀장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3) 이용 및 제공단계

개인정보파일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용 및 제공하여야 하며, 내부직원이 권한을 넘어 이용 및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파일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

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이용 및 제공 시 확인사항으로는 첫째, 법령상 요청 근거가 있는가, 둘째,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포함되는가, 셋째,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한가, 넷째, 제공을 요청한 목적에 적절한 개인정보항목인가, 다섯 째,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섯 째, 적절한 보안대책 등 처리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졌는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통해서 요청받은 경우만 이용 및 제공을 판단하며, 이용 및 제공사실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공받는 기관에 대해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을 제한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파기단계

공공기관은 업무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나 개인정보 삭제 및 파일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삭제 사유에 해당되며,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 달성 시나 개인정보 수집 시 안내한 개인정보기간 만료 시나 이외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저장형태별 파기방법은 전자적 파일형태의 경우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불용처분이나 매각 시 저장된 내용은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출력물형태의 경우 폐휴지 수집업자에게 출력물 원형으로 매각 등이 금지되며,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하여야 한다. 매각 및 처리 위탁 시 위탁관리와 유사하게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피해구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를 말하며, 직접적으로 컴퓨터 등을 조작해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한 실질적인 이용자라면 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동법 제23조 양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34조에서는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에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와 양형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춰 개정하거나 동 법률 규정에 준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표 5-36〉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및 벌칙 규정 비교

구분	통계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 취급 자의 의무	제34조(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5-36>의 계속

구분	통계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	<p>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p> <p>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p> <p>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p>	<p>제23조 (벌칙)</p> <p>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5.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보안

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행정기관에서 권한 없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한 자료를 오남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이름, 주민번호 등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개인정보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에 사용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매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생성·저장·활용되는 개인·기업·정부 내 시스템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네트워크상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곳이 유출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안 침해행위의 ‘신속성’과 피해 가능 범위의 ‘무제한성’ 등으로 단시간 안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 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5항은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30조 제2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한 방문조사·전화조사·우편조사 등에 따른 표본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동법 제31조 제2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에서 통계자료 제공 시 통계자료의 보호방법을 전자문서 등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검토 결과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보안방법에는 첫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사용, 둘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셋째, 개인서명 인증체제, 넷째, 통계적 비밀보호기법(masking method) 등이 있다.

첫 번째 주민등록 대체수단은 정보통신부의 ‘아이핀(i-PIN)’(2006년 10월 2일)을 들 수 있다. 기존에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서비스하던 ‘가상 주민번호 서비스’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준비 기관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함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의 약자인 ‘i-PIN : 아이핀’ 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정통부의 ‘인터넷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

넷 사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게시판 글 올리기 등을 할 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사용하던 실명확인 방법 대신 자신의 신원 정보를 본인확인 기관에게 제공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각 기관 고유의 식별번호(예: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가상주민번호)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5-5] i-PIN 이용 절차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들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기업들이 곤욕을 치렀다. 이들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서버에 그대로 저장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암호화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킹 같은 외부 침입을 막는 데만 막대한 투자를 했을 뿐 암호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데이터 보안의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암호화하면 검색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잇따른 유출사고와 집단소송에 휘말리면서 데이터 보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암호는 원래 군사나 첩보 분야에서 발달했던 기술. 하지만 세상이 디지털·네트워크화 되면서 암호는 일상적인 기술이 됐다.

세 번째는 ‘개인서명 인증체제’를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

자정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행정기관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정보 이용내역의 기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국무총리훈령 제526호).

현재 정보이용본인확인 인증체계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제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가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0조에서는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의무’(전자정부법 제27조),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의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5-37〉 전자서명 인증체계

구분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최상위 인증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증기관	행정안전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6개 기관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
발급범위	행정기관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대리인)

네 번째는 통계적 비밀보호기법이다. 통계작성기관에서는 마이크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 통계적 비밀보호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파일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

이 걸러지기 이전 단계의 자료인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자료가공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자료인 마이크로 자료에는 응답자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경우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특정 응답자에 대한 식별도 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이크로자료의 제공에 대한 요구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적 비밀보호기법(masking method)이 요구되고 있다.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임무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 정보화는 행정내부의 효율화와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부처 간 및 부서 간 정보공유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은 피할 수 없는 공적 요청이며, 그러한 과정의 전자화 역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개성에 비추어 긴급히 요망되는 사항이다.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해서는 첫째, 통계법 제30조 통계자료의 제공,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의 규정은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법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의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공유와 관련하여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해당 행정자료 작성기관의 개별법에 중앙통계행정기관인 통계청이 통

제작성 목적을 위해 행정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속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통계DB 연계·통합과 관련하여 통계법 28조 통계의 보급 규정에 통계DB를 구축하는 때에는 반드시 표준화된 통계DB 분류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등 법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기관 간 및 부서 간 행정자료의 공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오용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자료제공기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기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사용,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작업, 개인서명 인증체제 활용, 및 마이크로데이터에 통계적 비밀보호기법(masking method) 적용 등 업무단계별로 기술적 비밀보호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2. 시사점

개인정보가 내재된 행정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은 특정 해당기관과 연계하고, 그 원칙·절차·체계를 투명화하며,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유통되는지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이를 인식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행정정보의 비밀보호와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상호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관리기관에 정보관리권을 보장하여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정보보안이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또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를 독점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정보의 공동이용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 외에 첫째, 정보의 가공과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둘째, 정보 공동활용으로 인한 결과물이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기관뿐만 아니라 정보제공기관에게도 귀속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셋째, 정보 공동활용에는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보제공기관과 정보이용기관 간의 각기 상이한 입장과 유인체제로 자발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조정·통제·지원에 관한 엄밀한 법 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통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근(1997),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아태공법연구 제 4호.
- 권현영(200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 김동복(2001),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근거:실체적 적법절차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 김두환(1989), “정보화사회에 대한 법적대응:정보화사회에서의 기업비밀의 보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5집.
- 김영미(2007),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136)..
- 김현수(2006),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과제”,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 김형준(2005), “개인정보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 전망”, 한국전산원.
- 문정욱(2007),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공유 저해 요인: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9권 6호(통권413호).
- 박영우(200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사이트 운영과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제42권.
- 박종관·윤주명(2004), “지방정부 정부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447-467.
- 백윤철·이창범·장교식(2008), “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주).
- 성낙인(200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사생활비밀) 보호”, 한일법학회, 한일법학.
- 손승우(2008), “전자여권과 IT법상의 제문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 손영수(2008), “진료기록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 51권 제2호.
- 신영징(200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적 분석”, 한국지

- 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1호(통권53호).
- 신영징(2008),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제49권.
- 이민영(2004),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8호(통권346호).
- 이민영(2005),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조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6호 (통권 377호).
- 이민영(2006), “개인정보 취급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8권 1호(통권385호).
- 이민영(2006), “개인정보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8권 8호 (통권 392호).
- 이민영(2006),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정책 제18권 21호 통권405호.
- 이민영(200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9권 제10호
- 이순희·심주연(2005),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제33권.
- 이승욱(2005), “보건통계정보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0권 제1호 61-77.
- 이자성(2007), “일본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본 시민과 정부간 관계-알 권리와 설명책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창범·윤주연(2003),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 이항우(2006), “정보 보호와 공유자원 관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7호 163-192.
- 이희훈(20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 장종인(2006), “방송뉴스에 나타난 위험 :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11호(통권395호).
- 정은희(2008), “Social Networking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문제:페이스북

-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0호
- 정종인(2005),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8호(통권 379호).
- 채승완(2007),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체계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한일경상논집 제38권.
- 채우석(2007), “환경행정과 정보공개”,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 최종원(1996), “행정정보 공동활용 정책집행 사례분석:주민등록DB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제34권 2호.
- 최창호(200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8집 35-71,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성기(2007),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 법제처(2008),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 통계청(2008), 정보마당 법령자료(<http://www.nso.go.kr/>).